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151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3일 조정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가 없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중레저사업장 또한 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1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u>6.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u> <u>치</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제3항에</u>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의 수중레저활동사업에 관한 규율체계를 보면, 제2조(정의)¹⁾에 따르면 수중레저활동은 ‘수중’에서 하는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활동을 말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은 ①임대업 ②운송업 ③교육업으로 분류됨.

- ‘수중’은 현행법 제2조제1호에 의할 때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함.
- 수중레저사업 중 ‘교육업’은 현행법 제11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교육자의 배치의무 등을 두고 있음.

□ 한편, ‘실내 다이빙 풀’에 관한 현재의 법률 적용 현황을 보면, 실내다이빙 풀에서의 활동 중 강습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수중레저 교육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강습을 하는 교육업이 아닌 일반적인 다이빙 풀의 경우는²⁾ 그 관리가 어려워 안전관리 등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8. “수중레저사업”이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 나.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 다.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2023년 9월 기준 54개의 실내 다이빙풀 업체 중 18개 업체가 교육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음
(출처 : 해양수산부)

[표] 수중레저사업 업종별 현황

	임대업	운송업	교육업
사업내용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 레저기구 또는 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 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등록기준 (제15조 제1항)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 레저장비 및 장비에 관한 수리기술 보유 등	수중레저기구 보유 및 그 조종자격 취득이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 고용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 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 고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현행법상 안전요원 배치의무	별도의 규정 없음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8명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추가 배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수중레저교육자 1명 이상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탑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등록현황	477개소	267개소	880개소
비고			880개소 중 실내 다이빙풀 업체는 18개소가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2024. 7. 기준)

□ 이에 개정안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의무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레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짐.

즉, 현재 다른 시설의 관리 현황을 보면 수영장은 일반적인 체육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기준이 정해지고, 수상레저활동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실내 다이빙풀’에 대하여는 그 관리에 공백이 있으므로 입법 미비의 해소 측면에서 입법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①적용범위와 ②수중레저교육업의 경우 현행법상의 배치의무가 있는 교육자와 안전관리요원을 구분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현재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활동이 아닌 일반 다이빙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이빙풀이 다수(54개 업체 중 현재 18개 업체가 교육업으로 등록) 있어,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수중레저교육업’ 규정으로 규율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현행법상의 수중레저사업의 유형에는 교육업뿐만 아니라 임대업도 있는데 이 경우는 사업의 내용상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적을 수도 있어 안전관리요원 배치의무 업종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개정안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를 수중레저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0조(벌칙)에 의하면 수중레저활동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재규정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의 수중레저교육업의 경우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교육자의 배치의무가 있는데, 그 경우에 교육자와 별도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현행 배치의무가 있는 교육자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이와 관련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내 다이빙 풀의 경우에는 개정이 되어도 대부분 현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중레저사업 교육업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요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가 있으므로, 수중레저교육자가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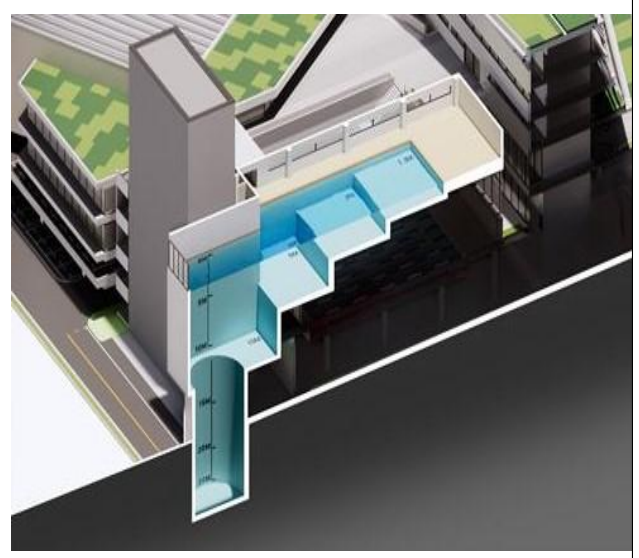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418

첨부1

다이빙풀 참고 사진



K-26 (경기 가평, 수심 26m)



북항마리나 (부산, 수심 24m)



K-26 (경기 가평, 수심 26m)



딥스테이션 (경기 용인, 수심36m)



딥스테이션 (경기 용인, 수심36m)



딥스테이션 (경기 용인, 수심36m)